

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제범죄”란 다음 각 목의 초국가적인 성격을 보유한 범죄 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.
 - 가.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하여지는 경우
 - 나.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그 준비, 계획,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
 - 다.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국제 범죄조직이 관여된 경우
 - 라.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다른 국가에서 중요한 효과를 갖는 경우
2. “국제범죄조직”이란 국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.
3. “관계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,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이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설치하는 기구·협의체 등을 포함한다.
 - 가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4. “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”이란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,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세부 범위)

국가정보원이 「국가정보원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(이하 ‘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’라 한다)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
2. 국제범죄에 관여한(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 북한·외국 및 외국인·외국단체·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(이하 “국제범죄조직 관련자”라 한다)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확인·견제·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
 - 가. 발견·추적·기록 및 관리
 - 나.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등 분석·검증 및 제공
 - 다. 적발·와해·역이용·추방·국내송환 등 저지 활동
 - 라.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 지원에 관한 활동
 - 마. 탐지·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
 - 바. 대응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
 - 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계기관·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과의 인력·정보 교류 등 협력
 - 아.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확인·견제·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

제4조(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기획·조정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,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.

제5조(직무수행 원칙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및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·추진하고 관계기관·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·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,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에 관여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제범죄조직 관련자를 탐지한 경우 확인·견제·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직무수행 방식)

-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 소속인 사실과 성명을 드러내지 않고 국제범죄조직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등)

- ①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둔다.
- ②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·전략 수립
 2. 국제범죄조직 대상 정보 수집·분석 및 추적·적발 등 대응
 3.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
 4.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해외 정보협력체계 구축
 5.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홍보 및 대내외 교육

6.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·운영
 7.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 그 밖에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력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1.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
 2.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
 - 가. 국제범죄에 관여된 인물·단체·집단 등에 대한 정보
 - 나. 국제범죄조직의 범죄활동을 탐지·차단·적발하기 위한 정보
 - 다. 해외 활동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합동 추적에 필요한 정보
 - 라.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사 개시·종결 등 처리 결과
 - 마. 그 밖에 관계기관 간 국제범죄조직 합동대응에 필요한 정보
-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공조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정보공유 등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·범죄 계획 등 추적·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, 수사,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

업무의 처리 상황·결과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으로부터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.
- ③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.
- ④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상호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,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 기관,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,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의 장, 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조사활동)

-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·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해당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.

- ③ 국가정보원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·녹화·복사·복제 등을 통해 기록을 수집·보존할 수 있다.
- ④ 국가정보원 직원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·검증·관리 등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·소지자·보관자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·디지털자료(이하 “임의제출물”이라 한다)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.
-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·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3항에 따른 분석·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.
- ⑤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- 1. 유류물로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
 - 2. 임의제출물 중 소유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
제13조(출국금지 및 출국정지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(교육·훈련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홍보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범죄 실태·피해예방법, 국제범죄조직 적발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 관련 사항의 정보 수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개인정보의 처리 등)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개인정보,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호 및 제2호(바목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)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
2. 제7조제2항(제1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)의 국제범죄정보 센터 수행 업무
3.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업무
4. 제12조에 따른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·검증·관리 등 업무
5. 제13조에 따른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관련 업무
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,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,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개인정보,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세칙)
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유류물 습득 조서

습득 일자		습득 장소				
습득 경위						
습득 품종 · 수량	연번	품종	수량	연번	품종	수량
	⋮	⋮	⋮	⋮	⋮	⋮
	※ 품종 · 수량이 많아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한다.					
참고사항						

「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」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물을 습득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.

이
의
제

국가정보원 담당관

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임의제출물 수거 조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수거 일자				수거 장소			
제 출 인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성 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)			생년월일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)		
		주 소 (법인·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)					
		연 락 처					
수거 경위							
수거 품종·수량	연번	품종	수량	연번	품종	수량	
	⋮	⋮	⋮	⋮	⋮	⋮	
	※ 품종·수량이 많아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한다.						
제출인의 기재사항	(※ 제출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.) 본인은 국정원 조사관으로부터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고,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 라 임의로 위 물건을 제출합니다.						

「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」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제출물을 수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정보원 담당관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제 출 인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임의제출물 목록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번호	품 종	수량	임의제출물		비고
			제출인	소유권 포기 여부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			[] 소유자 [] 소지자 / 보관자	[] 소유권 포기 [] 환부 요구	

「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」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제출물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인 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

확 인 자 (국가정보원 담당관) (서명 또는 인)